

1. 개정이유

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의 위임에 따라, 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거주요건 특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학교군 특례지역 지정 근거 신설(안 제4조의2)

- 영 별표 2 제2호가목 비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별표 2로 정함

나. 대상지역 지정(안 별표 2 신설)

- 충북혁신도시학교군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 또는 직접 작성 또는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또는 X년 예산에 X억원 반영되었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 또는 0부, 0실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

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별표와”를 “별표 1과”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의 지정) 영 별표 2 제2
호가목 비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
는 지역은 별표 2와 같다.

별표를 별표 1로 한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 지역의 지정(제4조의2 관련)

연번	시·도	학교군(소속 학교)	걸친 진료권	학교군에 해당하는 지역
1	충청북도	충북혁신도시학교군	청주권(진천군) 충주권(음성군)	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역별 선발 비율) 영 별표 2 제2호 각 목에 따른 지역별 세부 선발 비율은 <u>별표와</u> 같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지역별 선발 비율) ----- ----- ----- <u>별표 1과</u> --. <u>제4조의2(둘 이상의 진료권에 걸</u> <u>친 학교군 지역의 지정) 영 별</u> <u>표 2 제2호가목 비고에 따라 보</u> <u>건복지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</u> <u>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별표</u> <u>2와 같다.</u>